『인사말』



안녕 하십니까

장례지도사를 하고있는 포천시민 강명수 입니다.

작년 말까지 00병원 장례식장 사무장으로 재직하면서 포천 관내에서 발생되는 고독사와 무연고사를 시 및 요양기관에서 의뢰 받아 행정처리를 해왔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 조차도 외면 받는 고인분들의 존엄성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아쉬움에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연장지 내 에 안치실을(신고제) 설립해 장례식장을 이용하기 힘든 무연고 사망자 등 취약 계 층(입관만 진행)을 위해 유치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올립니다.

포천시 『노인 고독사,무연고 실태 및 처리 방안』 계획서

장례지도사 강 명 수

010-4143-0034

kmshds@naver.com

목차

- 설립 취지 / 목적
- 법규 / 법률
- 시설 및 인력 수급계획
- 장례식장 비교 / 수지 예산서 / 네트워크 활성화
- 예산 및 산출 / 통계
- 무연고,고독사 처리절차 및 공고
- 고독사 사망자수 변동추이 / 사망 시 행정절차
- 2019년도 연령별 1인 가구 비율변화
- 연령대별 고독사 추이
- 향후 2035년 노인 인구수 대비 독거 노인의 수 변동추이
- 포천시 장례식장 현황

설립 취지

- 故人(무연고 및 고독사) 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 존엄과 예우를 지향한다.
- 지자체 안치실을 설립해 장례식장을 이용하기 힘든 무연고 사망자 등 취약 계층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사후 영모 장례지원금(75만원)과 무연고 행정 처리비용(250만원)의 金額을 創出하여 포천시의 저 소득층 및 사회적으로 소외를 받는 포천 시민들에게 환원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지향한다
- 본 취지는 사랑,봉사,실천,나눔과 섬김의 정신으로 포천 시민들을 위한 처우 개선 복지를 지향한다.
- 지역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로 노출되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폭 넓은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지원한다.
- 장례식장을 이용하기 힘든 무연고 사망자 등 취약계층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성' 중심으로 운영하여 사설 장례식장과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설립 목적 및 법규

-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속에 지자체의 턱없는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
- 고독사는 2014년(1,379명) 2015년(1,676명) 2016년(1,820명) 2017년(2,008명) 매해 증가.
-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한 고독사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곧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8일 법안 심사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독사 예방법' 제정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무연고 사망자의 사체를 처리해야 한다.
-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설립 및 시행.. 포천시의 브랜드 가치 상승.
- 12조 법 시행규칙 제 4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정보를 공고, 연고자가 사망자의 유골을 인수하도록 해야 한다.
- 각 지자체는 게시판에 공고를 하여야 하며, 무연고 보관은 10년에서 5년으로 전환된다.

관련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에서는 무연고 사망자의 개념을 장례를 실질적으로 주관할 수 있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무연고 사망자는 실질적으로 연고자가 없는 경우와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며, 연고자가 있으나 시체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의 경우에도 무연고 사망자로 포함.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 ”제 28조 제3항 에서는 ‘복지 실시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 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당해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에서는 장제 급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는 장제 급여 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시설이용 및 인력 수급계획

포천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고독사(독고노인), 무연고사 , 무 빈소이용시(입관만) 를 원칙으로 한다.
안치실은 조립식 창고도 가능하며 6평~10평 (기존 건물도 가능) 가급적이면 포천 자연 장지에 유치.
장의-영구차(벤) 특수차량은 고인 이송 / 입관시만 운행-(입관 보조 가능)-외주 특수차량 일 일 섭외.
장례지도사 급여는 일의 중요도,난이도,책임정도에 따라 급여결정

구 분	면 적	예상 금액	비 고
안치실	6~10평	400만 ~500만	신고제(허가사항 아님)
장례지도사	1명	미정	직무급제,월급제
입관보조사	1명	7만원	입관 시 지급
장의용품	관,수의,결관	10만원	차후 지급
고인 이송(벽제기준)	영구차(벤)	13만원	입관 시 지급
구 분	**직 책**	**급 여**	**비 고**
장례 지도사	사무직/기능직	직무급제,월급제 중 도입	직무급제,월급제
입관 보조사	기능직	일당	입관 시
고인 이송(운구)	협력업체	일당	입관 시

장례식장 비교 / 수지 예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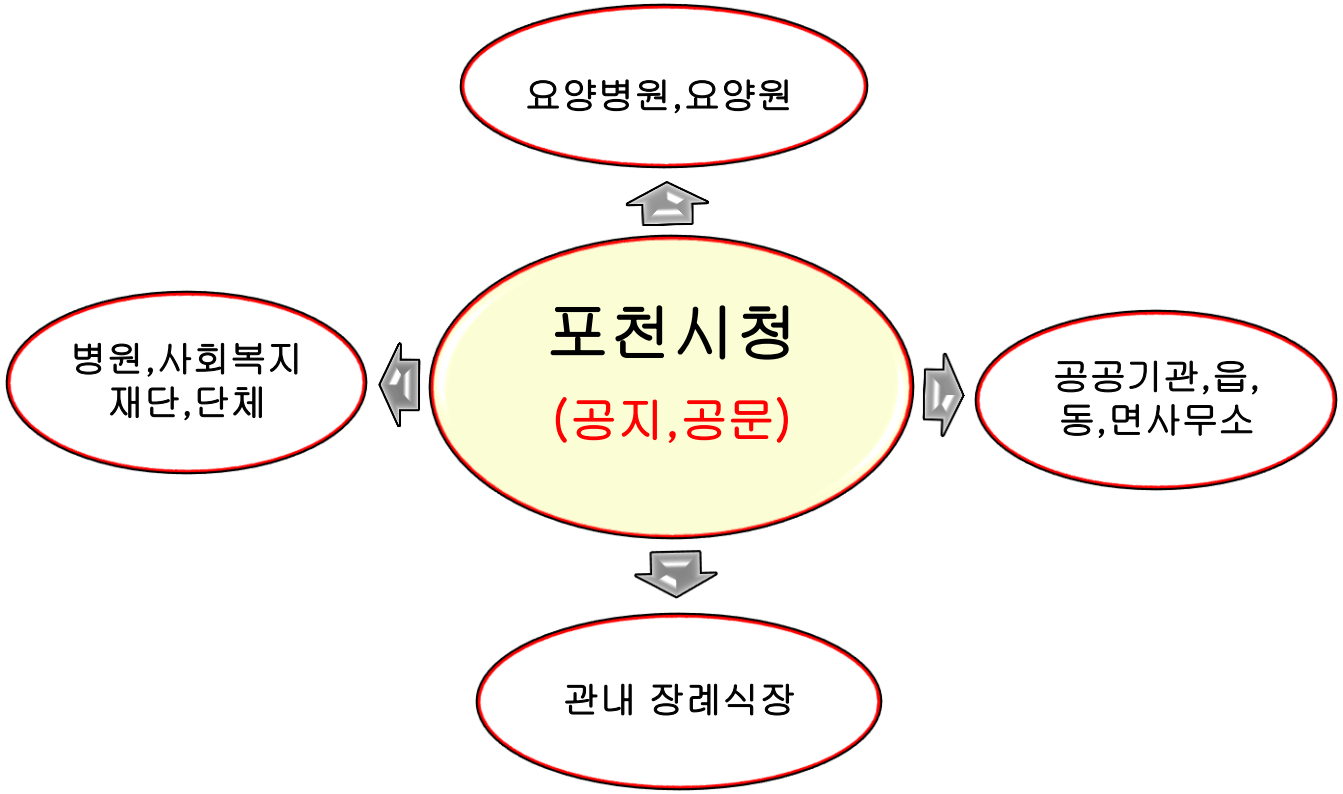
아래는 1인 사망 시 일반 장례식장 과 포천에서(운영 시) 발생하는金額 차이와 收支입니다.

구 분(1인기준)	장례식장(화장금액/용품,벤,포함)	포천시(화장금액/용품,벤,포함)	차감금액(이윤)	비 고
무연고	2,500,000	1,300,000	1,200,000	화장금액 100만원 포함
고독사(수급 자)	750,000	300,000	450,000	화장금액 무료
입관시(무빈 소)	2,300,000	1,000,000	1,300,000	화장금액 미포함

아래는1인 사망 시 영모 장례 지원금을 기준으로 포천시에서 운영 시 발생하는 收支입니다.

구 분	영모장례금액 행려지출비용	영구차(벤)	장례용품(관,수의,결관)	입관보조비	합 계	차감금액(이윤)
고독사 1인기준	750,000	130,000	100,000	70,000	300,000	450,000
무연고 1인기준	1,500,000	130,000	100,000	70,000	300,000	1,200,000
1인사망시(영모 장례금액75만/무연고 지원금액150만) – 300,000원 = 차감금액 ex) 1인 사망 750,000-300,000=450,000원(산출)						
1인 사망 시(무연고,고독사) 총 지출은 300,000원 입니다. (입관보조비,장의용품비,고인 운구비)						

지자체의 공지를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에 따른 빠른 대체요구



효과

공지,공문을 통한 지자체의 공공기관 및 정보를 상호간에 신속히 공유하여 빠른 고독사의 사후 진행을 유치 할 수 있다.

기대

지역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로 노출되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 및 폭 넓은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지원한다.

대상

장례식장을 이용하기 힘든 무연고 사망자 등 취약계층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무연고,고독사 처리절차 및 공고

무연고 시신의 처리체계

- 보건복지부는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사망자의 존엄성,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공공복지 증진 등을 고려하여 무연고 시신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매뉴얼을 마련 하고 있음.

무연고 시신의 처리절차

- 시장 등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경찰서장 등에게 인수받은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사망자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탐문·조사로 사망자의 연고자 여부를 재확인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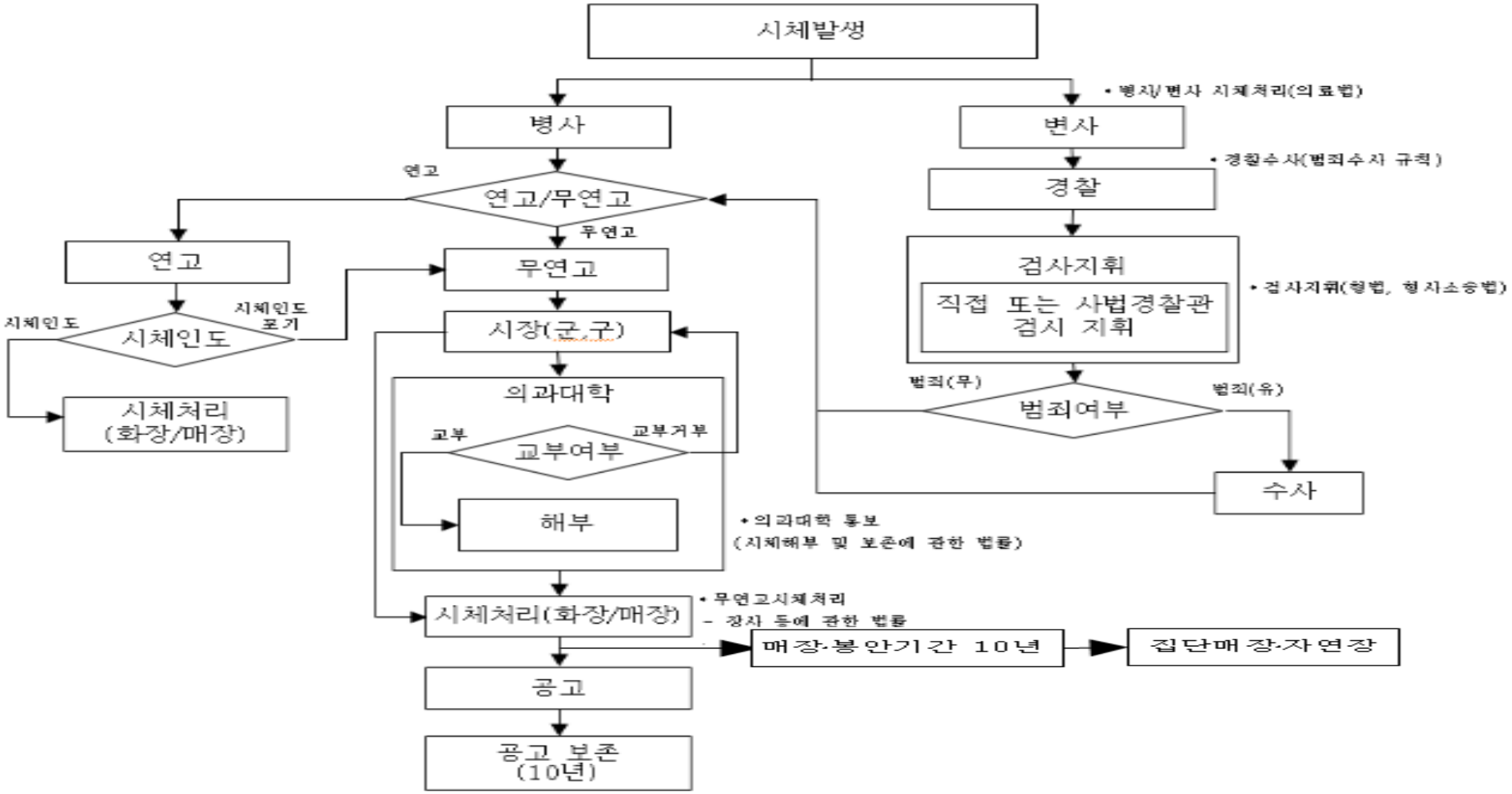
무연고 시신의 처리방법 및 공고

- 시장 등은 의과대학의 장이 시신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하고,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 장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무연고 시체 등을 화장하 지 아니하고 매장 또는 봉안한 경우에는 화장을 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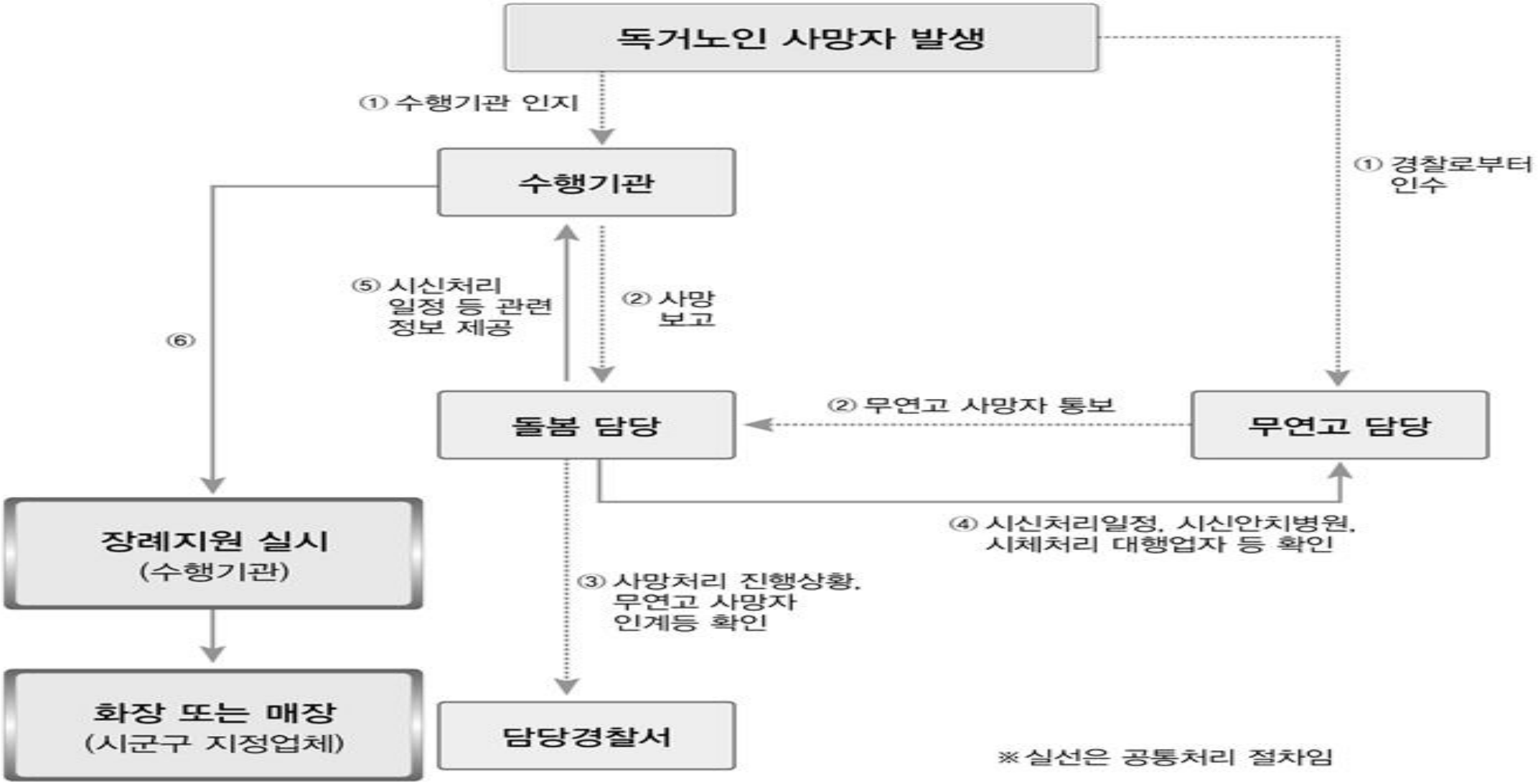
무연고 시신처리에 대한 관리·감독

- 시장 등은 투명하고 적정한 무연고 시체의 처리를 위하여 염습·입관 등의 처리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장례지도사가 진행하도록 하고, 담당공무원이 최대한 참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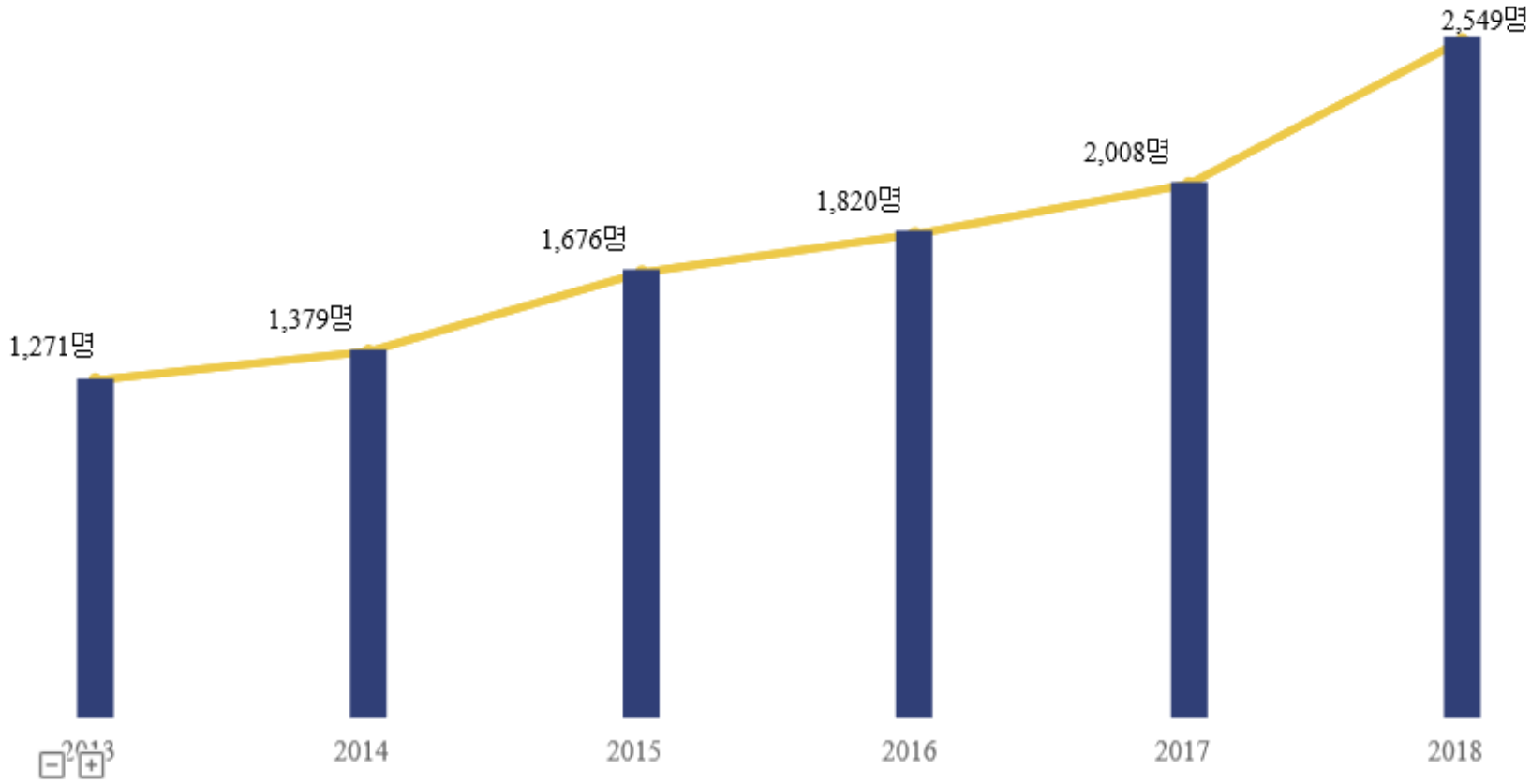
사망자 발생시 행정절차


시체발생
병사
변사
• 병사/변사 시체처리(의료법)
연고
연고/무연고
• 경찰수사(범죄수사 규칙)
경찰
무연고
연고
검사지휘
직접 또는 사법경찰관 검시 지휘
• 검사지휘(형법, 형사소송법)
시체인도
시체인도 포기
시체인도
시장(군,구)
범죄(무)
범죄(유)
범죄여부
의과대학
교부
교부거부
교부여부
수사
해부
• 의과대학 통보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체처리(화장/매장)
• 무연고시체처리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매장·봉안기간 10년
집단매장·자연장
공고
공고 보존
(10년)

독거노인 사망시 행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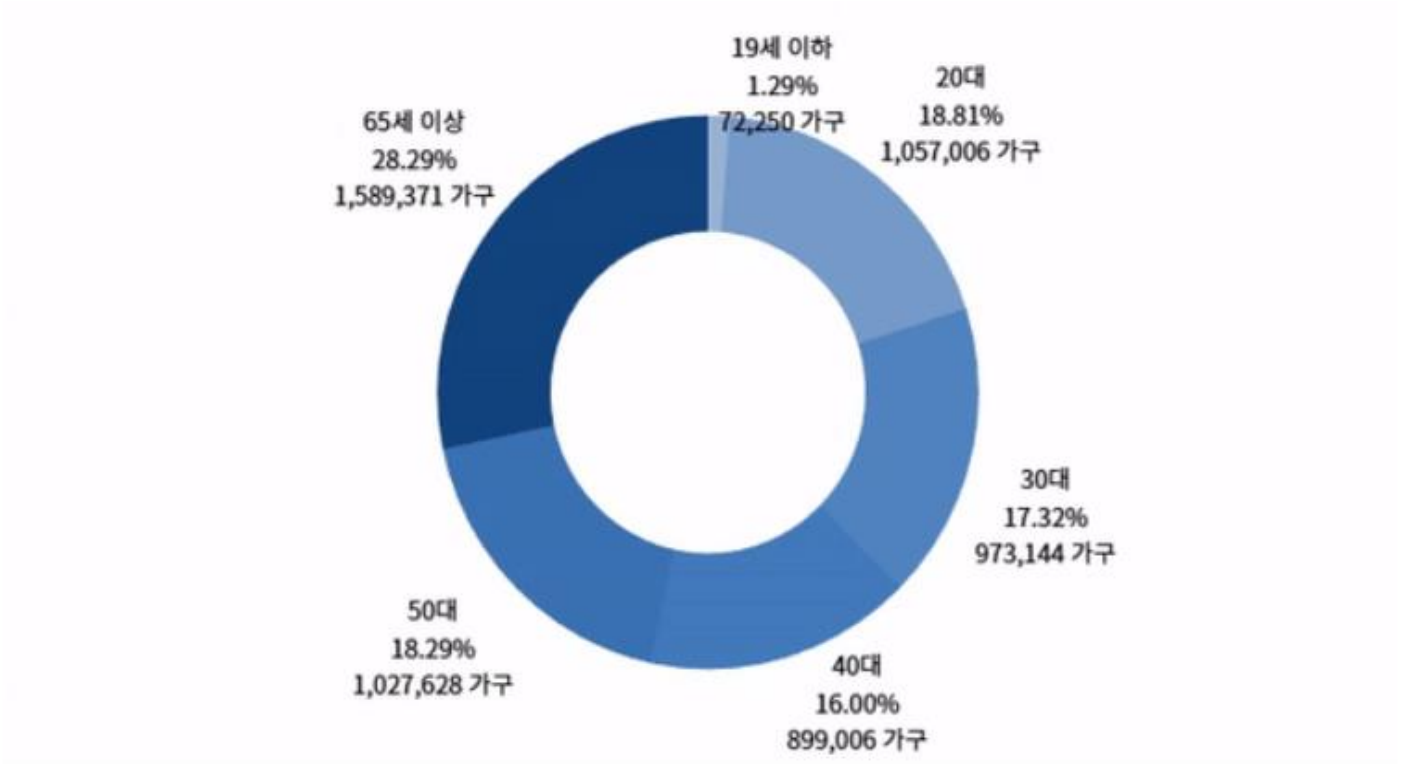


2013~2018년 전국 고독사 사망자수 변동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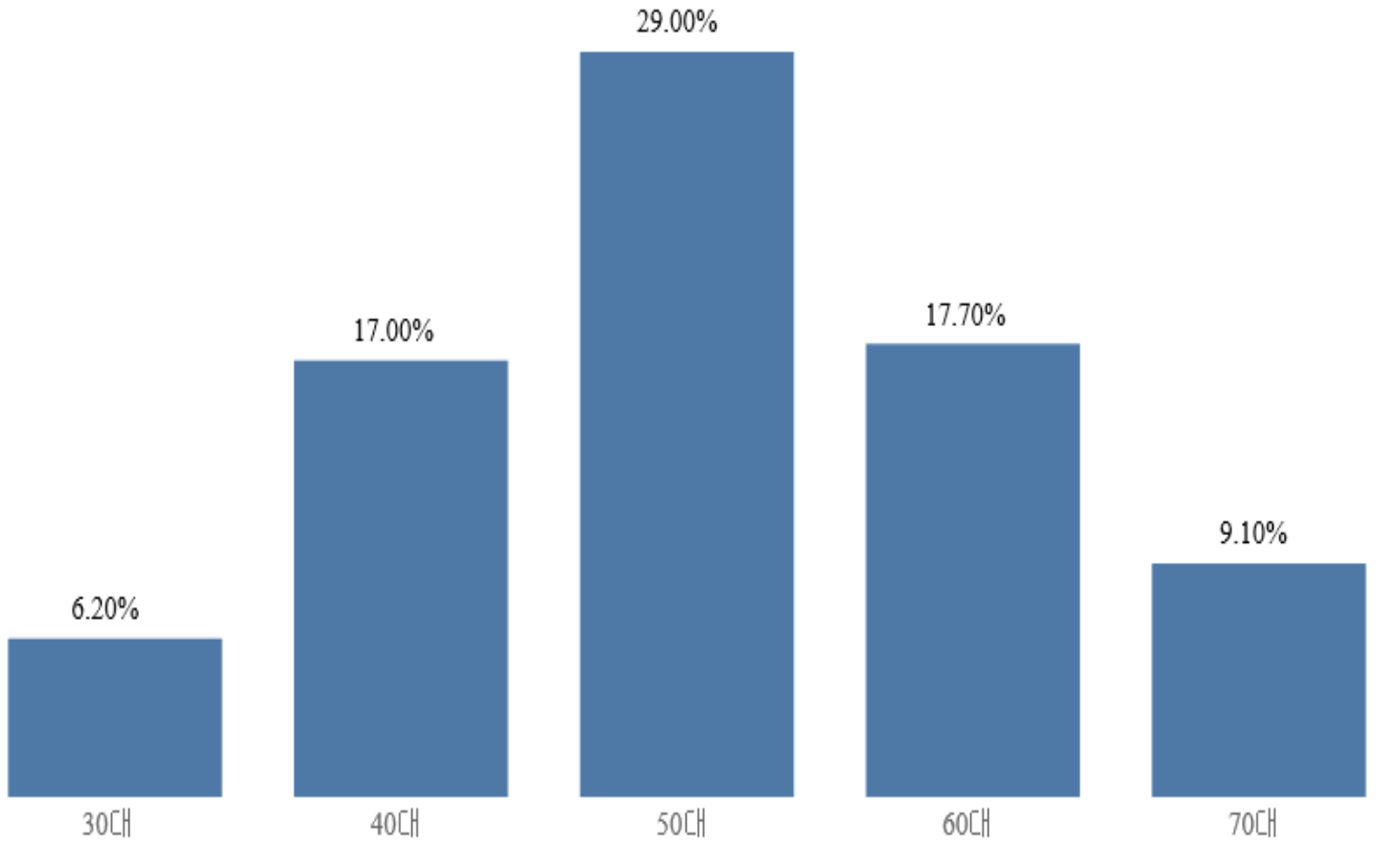


Data Source From : 보건복지부 , KOSIS

2019년도 연령별 1인 가구 비율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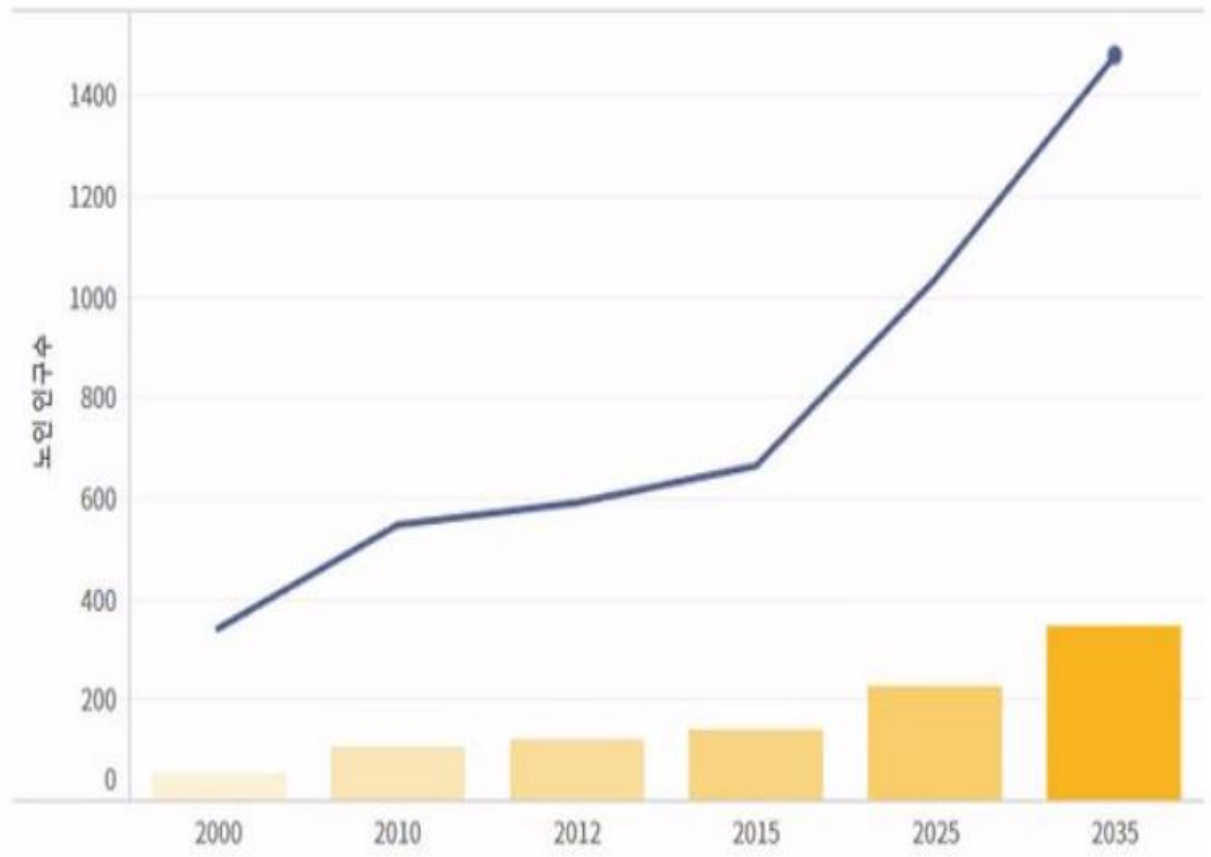


연령대별 고독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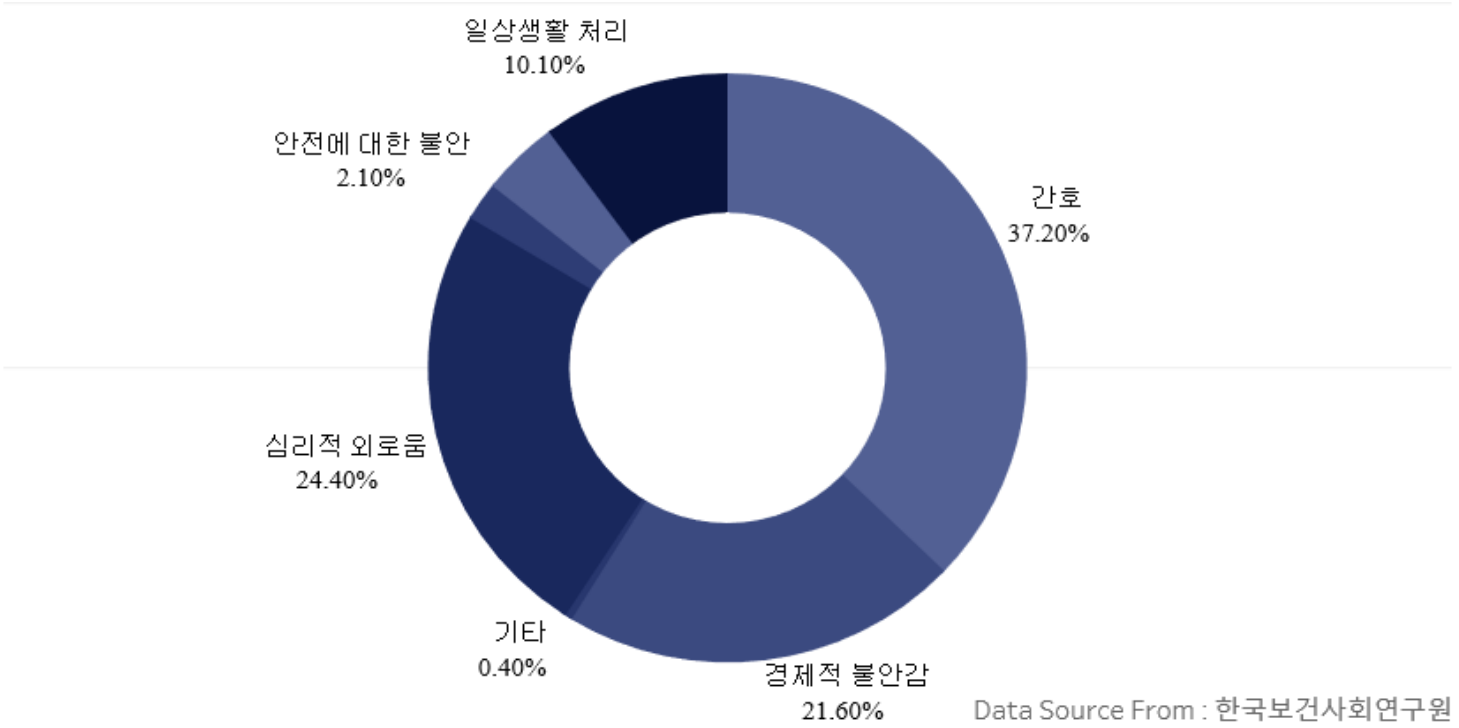


Data Source From : 보건복지부

향후 2035년 노인 인구수 대비 독거 노인의 수 변동추이



고독사의 주 원인



Data Source From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기도 년 도별 무연고사 현황

(출처: 경기도 조사자료 재정리,2017, 성별 미상은 제외)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5년간	17년(6월)	2017예상
경기도계	139	222	276	297	325	1,259	192	384
수원시	33	46	39	43	48	209	24	48
성남시	10	17	42	52	39	160	22	44
용인시	2	4	8	2	7	23	8	16
부천시	4	4	8	10	10	52	5	10
안산시	4	24	19	13	13	73	7	14
안양시	2		9	5	3	26	1	2
화성시	2	4	15	15	21	57	3	6
평택시	9	0	7	2	4	22	5	10
시흥시	2	6	7	9	9	33	10	20
김포시	4	2	1	0	0	7	0	0
광명시	0	3	2	2	7	14	4	8
광주시	3	14	4	11	6	38	5	10
군포시	3	1	0	0	9	13	2	4
오산시	4	3	2	9	8	26	3	6
이천시	2	2	7	6	8	25	2	4
안성시	4	1	5	6	7	23	6	12
의왕시	0	0	0	0	0	0	0	0
하남시	7	7	9	6	6	35	3	6
여주시	1	0	1	5	5	12	3	6
과천시	0	0	1	0	0	1	0	0
고양시	5	6	10	19	29	69	14	28
남양주시	3	4	12	8	10	37	7	14
의정부시	2	8	14	13	8	45	6	12
파주시	2	5	7	11	13	38	9	18
양주시	1	2	7	5	6	21	4	8
구리시	6	7	8	5	16	42	9	18
포천시	11	31	15	22	23	102	18	36
동두천시	4	5	8	7	7	31	4	8

포천시 관내 장례식장 현황

안치시키는 역할을 맡은 장례식장이 75만원 이상의 추가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

특히 연고자를 찾는 과정이 길어지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시신 안치비용이나 기타 비용 등은 고스란히 장례식장의 몫

포천 의료원	031-539-9446	의료원
포천 장례문화원	031-541-4144	직 영
우리병원 장례식장	031-542-0444	임 대
금강산 장례문화원	031-534-4442	임 대
관인 농협 장례식장	031-533-9086	농 협
영북 농협 장례식장	031-532-0832	농 협
메디힐 장례식장	031-534-4401	임 대

기타…향후 지자체에서 공설 장례식장 유치 운영

-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홀로 사는 노인, 무연고자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공설 장례식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개정 공포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공설 장례식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홀로 사는 노인,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 공설 장례식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게 됐다.
- 또 공설 장례식장은 사설 장례식장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설비 외에도 무연고 시신 등을 보관하기 위한 별도의 시신 보관용 냉장. 냉동시설 2개 이상과 예비용 빈소 1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 복지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 장례 지원이 강화되며, 법인묘지 등의 기록. 보관 의무 등으로 소비자 권리는 강화된다" 며 "아울러 과징금 부과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장사시설 설치. 관리자 등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